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44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03,933,780원, 지방교육세 382,979,750원, 농어촌특별세 205,396,960원 합계 4,692,310,4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redacted]부 고시 제2006-272호)된 [redacted]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위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redacted]·[redacted]시설부지 및 시설물과 관련하여, 국토[redacted]부와 [redacted]부 사이에 체결된 '[redacted]부와 [redacted]부 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이 2012. 10. 15. 최종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전대상시설"이라 함은 위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전 또는 용도폐지되는 토지·건물 등 기존 [redacted]·[redacted]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 나. 제[redacted]부대　　다. [redacted]학생[redacted]학교
> 라. [redacted]정학교　　바. [redacted]체육부대
> 사. [redacted]단 [redacted]지원본부　　자. [redacted]대 [redacted]
> 차. [redacted]골프연습장　　카. 송파학사 <기타 생략>
>
> 2. "대체시설"이라 함은 기존 [redacted]·[redacted]시설의 용도에 대체되는 토지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 3. "주거복지시설"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복지시설부지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군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 4. "예하부대 등"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소재한 [redacted]부의 소속기관 및 그 예하부대를 말한다.
>
> 제3조(대상사업) 이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redacted]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시 [redacted]동 및 [redacted]시 [redacted]동 일원 택지개발 본 단지(이하 "본 단지"라 한다) 사업
> 2. 기존 국방·[redacted]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사업(인접 간선시설 포함)
> 3. 주거·복지시설건립사업(부지 포함)
> 4. [redacted]대 CC 및 [redacted] 골프장의 대체시설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제5조(이전대상시설의 이전 등)

① [redacted]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인수한 후 이전대상시설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6조(대체시설사업 시행 등)

① 원고를 제3조의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시설사업을 자기비용으로 시행·준공한 후 이를 예하부대 등에 양도하도록 한다.

제7조(주거·복지시설의 배치)

② [redacted]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redacted]부와 협의를 통하여 아래 각 호의 주거·복지시설을 위례신도시 내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 및 제공하도록 한다.

1. 골프연습장(400타석) 2. 군자녀 기숙사(600실)

5. 군아파트(5,000세대 부지, 1,500세대 건축) <기타 생략>

제8조(대체골프장 제공 및 [redacted]사업지원)

① [redacted]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남성대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을 양여받는 조건으로 [redacted]부와 사전협의하여 수도권지역에 18홀 규모의 대체골프장 1개소를 매입하여 제공하게 하고, [redacted]부가 지정하는 지역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제공하게 한다.

제9조(비용부담 및 재산처분)

① [redacted]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기비용으로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상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본 단지 사업비에 이를 계상하도록 한다.

② 토지, 건물 등 이전대상시설 및 대체시설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및 [redacted]·[redacted]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기부 및 양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무총리실 조정(2011. 6. 22.) 및 '위례신도시 군시설 기부·양여방안 관계차관회의 결과'(2011. 11. 4.)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4. 3. 27. 위 기본협약에 따라 [redacted]부 [redacted]지역 군부대이전사업단장과 [redacted]학교, [redacted]학사, 국군 제[redacted]부대의 각 이전사업 및 [redacted] A1-9BL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하여 각 최종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redacted]군사학교 이전사업]

제4조(협의사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61필지/4,916,163㎡, 건물: 297동/203,995㎡, 공작물: 155식, 입목죽: 143,437주)
2. 양여재산(토지: 200필지/1,377,723㎡, 건물: 118동/46,442㎡, 공작물: 270식, 입목죽: 1,474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redacted]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redacted]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LH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redacted]부에 기부한다.
2. [redacted]부는 이 사건 기본협약 제7조 제2항의 위례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위례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redacted]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redacted]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redacted]학사 이전사업]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필지/15,484㎡, 건물: 1동/25,167㎡)
2. 양여재산(토지: 10필지/86,207㎡, 건물: 2동/5,230㎡, 공작물: 33식, 입목죽: 3,587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국방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redacted]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redacted]부에 기부한다.
2. [redacted]부는 이 사건 기본협약 제7조 제2항의 위례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위례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redacted]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redacted]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위례 A1-9BL 아파트 건립사업]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필지/63,916㎡, 건물: 1동/210,106㎡)
2. 양여재산(토지: 34필지/229,615㎡)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redacted]부가 기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채납 받은 후 [redacted]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redacted]부에 기부한다.
2. 국방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국군 제[redacted]부대 이전사업]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55필지/361,210㎡, 건물: 42동/72,344㎡, 공작물: 35식, 입목죽: 56,412주)
2. 양여재산(토지: 67필지/191,446㎡, 건물: 51동/40,277㎡, 공작물: 292식, 입목죽: 4,551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redacted]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redacted]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redacted]부에 기부한다.
2. [redacted]부는 이 사건 기본협약 제7조 제2항의 위례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위례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redacted]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국방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라. 원고는 위 기본협약 및 최종 합의각서에 따라 2014. 6. 30.부터 2016. 6. 8.까지 [redacted]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redacted]시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2014. 8. 18.부터 2018. 1. 10.까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분(6건)에 관하여 취득세 836,313,340원, 지방교육세 82,752,010원, 농어촌특별세 31,354,490원 등 합계 950,419,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토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은 일부 감액 경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지시설 등을 신축하였고, 이후 그 부지는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었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73조의2 제1항, 제76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4,103,933,780원, 지방교육세 382,979,750원, 농어촌특별세 205,396,960원 합계 4,692,310,49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 2항, 제73조의2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은 기부채납이나 임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원고가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부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국가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택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바, 이러한 취득 경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76조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그 해당부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적어도 구 농어촌특별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 1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2)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인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다른 조항과의 체계, 입법취지 등에 문언적 해석을 더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애당초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2항은 원고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76조 제1항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각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규정하고 있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주택바닥면적이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감면 규정의 해석상 임대나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모두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임대나 분양, 공급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위 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감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별지]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redacted]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redacted]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redacted]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redacted]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끝.

■ 농어촌특별세법(2016. 12. 20. 법률 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redacted]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redacted]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끝.